

# '20년도 핀테크 지원사업 공고

## -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지원 -

(한국핀테크지원센터 / '20. 03. 31.)

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.

이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중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지원 목적

-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, 손해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(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)
-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비하고 비용 문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테스트 참여 핀테크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,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### □ 지원 대상

-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\*(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요)

\* 지원대상은 핀테크 기업에 한정되며, 금융회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

-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(갱신포함)

## □ 지원 금액

○ 보험료의 50%(최대 1천만원 이내)

- 지원 금액, 기업 수\*는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\*\*

\* 보험료는 기업별로 지원(한 기업이 여러 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더라도 1개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 가능, 1개의 서비스를 위하여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총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)

\*\*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가능

- 보험료는 보장기간 1년 단위로 지원 예정\*

\* (예시) 보장기간이 '20. 5. 3.부터 '22. 5. 2.인 경우 1년치 보험료에 한하여 지원

- 가입 시기와 관계 없이 '20. 1. 1. 이후 보장되는 범위에서 보험료 지원 (보험개시 시작월 기준 월별 안분)\*

\* (예시1) 보장기간이 '19. 10. 10.부터 '20. 9. 9.인 경우 8개월분 보험료 지원

(예시2) 보장기간이 '20. 6. 7.부터 '21. 6. 6.인 경우 1년치 보험료 지원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 등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보험료 환수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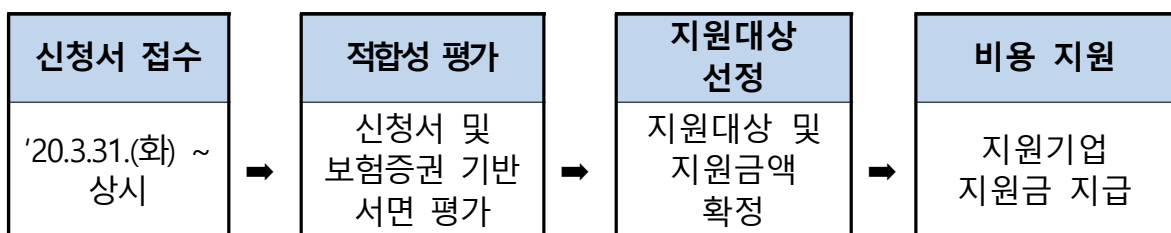
## □ 신청 절차

○ 신청접수(수시접수) → 평가(월별 진행) → 비용지원(월별 진행) → 사후관리(계속)

- 신청서 및 보험증권 내용을 토대로 지원 적합성 및 지원금액 검토

- 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핀테크 기업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

### < 책임보험료 지원 수시접수 절차(예시) >



## □ 신청 방법

- (접수 일자) '20년 3월 31일(화) ~ 상시접수
- (접수 방법) 이메일 신청: testcost@fintechcenter.or.kr
  - 메일 제목은 비용지원신청\_책임보험료\_업체명으로 작성 바람
- (접수 서류) 신청서 및 증빙서류(별첨 양식 참고)
- (접수 문의)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박유경 사원, 070-4250-9969

2020. 3. 31.

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